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405

발의연월일: 2023. 3. 3.

발 의 자:정희용·정우택・구자근

김영식 • 박대수 • 윤창현

최춘식 • 안병길 • 홍석준

강대식 · 김상훈 · 박덕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협의와 대통령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라함)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되고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2024년 4월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나, 정부가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특위원회로 이관을 추진 중인 점과 농어업과 농어촌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촉위원 구성을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화 함으로써 농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어업과 농어촌 발 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조).

법률 제 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학계 등 관련"을 "사람으로서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및 문화"로 한다.

제13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③
호의 사람이 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2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u>학계 등 관련</u> 분야의 전문	사람으로서 지역개발, 교
가 12명 이내	육, 보육, 보건복지 및 문
	<u> ই</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제13조(존속기한)
시행일부터 <u>5년간</u> 존속한다.	<u>10년간</u>